

# 의안검토보고서

1. 발의 또는 제출자 : 대전광역시장
2. 건명 :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예비조례  
전부개정 조례안
3. 안건요지 : 별첨
4. 검토의견 : 별첨

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8년 5월 28일

행정자치위원회

전문위원 박춘용

#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본 조례 안은 2008년 5월 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5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1. 제안이유

「공무원여비규정」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, 운임 및 숙박비를 정액제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가. 대전광역시장 등의 여비 지급구분을 정함(안 제3조제1항).

나. 운임 및 숙박비를 정액제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마련함(안 제4조).

다. 「공무원여비규정」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(안 제5조).

## 3. 검토의견

### ○ 본 개정 조례 안은

「공무원 여비규정」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운임

및 숙박비를 사후정산에 의한 실비지급에서 정액제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하고, 부칙으로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등 3개의 조례에 대하여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일부내용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,

별표 1 중 숙박비의 경우 1일 기준 시장을 제외하고는 3급 이상 46,000원, 4급 이하 30,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비에 미치지 못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증액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.